파트 B 절차적 보호 통지

뉴욕주 교육부
절차적 보호 통지
2024년 5월

절차적 보호 통지: 유아원 및 학령기 장애 학생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로서 귀하는 뉴욕주의 특수 교육 위원회(CSE) 또는 유아원 특수 교육 위원회(CPSE)의 필수 멤버입니다. CSE/CPSE는 자녀분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추천 개발에 책임을 가집니다. 귀하는 자녀분의 특수 교육 필요에 대한 CSE/CPSE의 논의 및 의사 결정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연방법 및 주법에 의거하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특수 교육 및 무료 적정 공립교육(FAPE)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권리인 절차적 보호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 1회 및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반드시 절차적 보호 통지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최초 의뢰 또는 부모님이 자녀 평가를 요청한 후.
- 부모님이 사본을 요청할 때.
- 중재 또는 공정 심의를 요청한 학년도의 첫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 후.
- 학교 학군이 귀하가 뉴욕주 교육부(NYSED)에 접수한 뉴욕주 불만 제기의 사본을 학년도에 처음 받았을 때.
- 징계 배정 변경이 초래될 훈육 사유로 인해 자녀분이 정학 또는 제외 처분 결정이 되었을 때.

절차적 보호 통지는 미 연방 교육부(USDE)가 개발한 모델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뉴욕주 요건에 따라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목차

일반 정보 1

사전 통지문(추천 통지서) 1

모국어 2

이메일 2

학부모 동의 - 정의 2

학부모 동의 3

독립 교육 평가 6

정보의 비밀 유지 8

정의 8

개인 식별 8

학부모 통지 8

접근 권한 9

접근 기록 9

1명 이상의 자녀 기록 10

정보 종류 및 위치 목록 10

비용 10

학부모 요청으로 기록 수정 10

심의 기회 10

심의 절차 11

심의 결과....11

개인 식별 정보 공개 동의....11

보호....12

정보 파기....12

분쟁 해결 옵션....12

중재....13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14

적법 심의 불만 제기와 뉴욕주 불만 제기의 차이
절차....14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 채택....15

최소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15

불만 제기 접수....16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절차....18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18

적법 절차 불만 제기....18

모델 양식....20

적법 절차 불만 제기 및 심의 계류(미결) 중 자녀의 배정
Pending (Pendency)....20

해결 절차....21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심의....24

공정한 적법 심의....24

심의 권리....25

속성 검토 및 구제 명령 26

이의제기 28

결정의 최종성, 이의제기, 공정한 검토 28

심의 및 검토의 일정 및 편의 29

민사소송과 이런 소송 접수의 기간 29

변호사 비용 30

장애 학생 징계 절차 32

학교 교직원의 권한 32

징계 제외로 인한 배정 변경 35

환경 결정 36

이의제기 36

이의제기 중 배정 37

아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자격이 없는 학생 보호 37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의 의뢰 및 조치 39

공공 및 민영 혜택/보험 사용 40

공공 보험 해당 장애 아동 40

민영 보험 해당 장애 아동 41

아동의 부모가 일방적으로 공공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배정하기 위한 요건 42

일반 42

자료 43

일반 정보

사전 통지문(추천 통지서)

34 CFR 섹션 300.503; 8 NYCRR 섹션 200.5(a) 및 (c)

통지

학군에서는 다음 상황에서 언제든지 서면 통지(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를 해야 합니다:

1. 자녀의 분류,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할 것을 제안, **또는**
2. 자녀의 분류,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FAPE을 제공할 것을 거부.

서면 통지문이 학부모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학교 학군의 조치와 관련된 경우 학군은 이런 동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통지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지문 내용

서면 통지문은 반드시:

1. 귀하의 학군이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학군이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제안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학군 보고서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장애인 교육법(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5. 귀하의 학군이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가 평가를 위한 초기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통지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6. IDEA 파트 B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리소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7. 자녀의 CSE 또는 CPSE가 고려한 다른 선택 사항과 그 선택이 거부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8. 귀하의 학군이 그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다른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문 제공

통지문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국어 또는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국어나 기타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학군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지문을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두로 번역됩니다.
2. 귀하가 통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1과 2가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가 있습니다.

모국어

34 CFR 섹션 300.29; 8 NYCRR 섹션 200.1(ff)

*모국어*란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에 대해 함께 사용할 때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그 사람이 보통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이의 경우, 아이의 부모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
2. 아이와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아이에 대한 평가 포함)에서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아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또는 문자 언어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은 그 사람이 보통 사용하는 것입니다(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이메일

34 CFR 섹션 300.505; 8 NYCRR 섹션 200.5(a), (f) 및 (i)

학군에서 학부모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서면 통지서(추천 통지서)
2. 절차적 보호 통지 **및**
3. 적법 절차 불만 제기 관련 통지

학부모 동의 - 정의

34 CFR 섹션 300.9; 8 NYCRR 섹션 200.1(l)

동의

*동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동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완전히 통보 받았습니다.
2. 귀하는 해당 행위를 서면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며, 동의는 해당 행동을 설명하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과 누구에게 공개될 기록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3. 귀하는 동의가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동의를 철회한다 하여 동의 이후로부터 철회 이전까지 발생한 조치가 소급되어 부정(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동의

34 CFR 섹션 300.300; 8 NYCRR 섹션 200.5(a) 및 (b)

최초 평가를 위한 동의서

귀하의 학군은 먼저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 항목에 설명된 학부모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귀하의 자녀가 IDEA 파트 2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학군은 반드시 자녀가 장애 아동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 평가를 위해 귀하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기 평가에 동의한다고 해서 학군이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데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공립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공립 학교에 자녀를 등록하려는 경우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자녀가 학령기인 경우, 학군은 중재 또는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제기, 해결 회의 및 공정한 적법 심의 절차를 활용하여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지 않고 자녀가 자격이 있었더라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군은 자녀를 찾고 식별하여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뉴욕주 보호 아동의 최초 평가를 위한 특별 규칙

아동이 뉴욕주 보호 아동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학군은 다음의 경우 장애 아동 여부 판단을 위한 최초 평가를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군은 아이의 부모를 찾을 수 없음
2. 뉴욕주 법에 따라 부모의 권리가 파기됨 **또는**
3. 판사가 교육적 결정을 내리고 최초 평가를 위한 동의를 할 권리를 부모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함.

뉴욕주에서 뉴욕주 보호 아동은 다음과 같은 21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법 섹션 358-a, 384 또는 384-a, 가정법원법 3조, 7조 또는 10조에 따라 배치되거나 환송되었거나, 사회복지법 섹션 383-c, 384 또는 384-b에 따라 입양될 수 있는 사람 또는
2.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아동가족서비스 담당실 관리 하에 있는 사람 또는
3. 사회복지법 섹션 398(1)에 따른 빈곤 아동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동의

귀하의 학군은 자녀에게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군은 반드시 자녀에게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러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군은 귀하의 동의 없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자녀의 CSE 또는 CPSE가 추천하는)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합의나 판결을 얻기 위해 적법 절차(예: 중재, 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심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거부하거나 해당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학군이 자녀에게 동의를 구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학군은:

1. 자녀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는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 귀하의 동의가 요청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열거나 자녀를 위한 IEP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 동의 철회

귀하가 학군에 학군이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철회(취소)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1. 자녀에게 제공되던 모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중단됩니다.
2.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나 판결을 얻기 위해 법적 절차(중재, 해결 회의 또는 공정 적법 심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자녀에게 추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4.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IEP 회의를 열거나 IEP를 개발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동의 철회로 인하여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귀하의 학군이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를 재평가하기 전에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 **그리고**
2. 귀하가 응답하지 않음

귀하가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군은 중재,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해결 회의 및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를 통해 자녀의 재평가 동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초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학군은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IDEA의 파트 B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문서화

학교는 반드시 최초 평가 및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 동의를 얻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최초 평가를 위해 뉴욕주 보호 아동의 부모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학군의 노력의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통화하거나 시도한 전화와 이러한 전화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학부모에게 보낸 통신의 사본과 받은 답변 **그리고**
3. 학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그 방문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보험 이용에 대한 학부모 동의

공공 및 민영 혜택/보험 사용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군이 학부모의 민영 또는 공공 보험금을 이용하기 전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배정한 학생 및 가정 학습 학생에 대한 동의

자녀를 자비로 사립 학교에 등록했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자녀의 초기 평가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군은 동의 무효화 절차(예: 중재,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심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녀를 공평한 서비스(부모가 배정한 사립 학교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동의 요건

학군이 다음을 하기 전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자녀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 **또는**
2. 테스트나 평가 전 모든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테스트나 평가 실시

귀하의 학군은 어떤 한 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귀하의 동의 거부를 사용하여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에 대해 귀하나 자녀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반드시 이런 기타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동의 거부가 자녀분에게 FA{E가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사설 교육 평가

34 CFR 섹션 300.502; 8 NYCRR 섹션 200.5(g)

일반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군에서 받은 자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IE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EE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은 IEE에 적용되는 학군의 기준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독립 교육 평가*란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군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시험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공 비용*이란 각 주에서 IDEA의 파트 B 요건 충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주, 로컬, 연방 및 민간 지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IDEA의 파트 B 규정 따라 학군이 평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 비용으로 평가받을 학부모 권리

다음 조건에 따라 학군에서 받은 자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 비용으로 자녀의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공공 비용으로 자녀의 IEE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에서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로 불필요한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a) 자녀에 대한 평가가 적절했음을 보여주는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불만 제기 또는 (b) 학군이 심의에서 귀하가 획득한 자녀의 평가가 학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공 비용으로 IEE 제공.
2. 귀하의 학군이 심의를 요청하고 최종 결정에서 자녀에 대한 학군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여전히 IEE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공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자녀의 IEE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에서는 왜 학군에서 제공한 자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학군은 설명을 필수로 요구할 수 없으며 자녀의 IEE를 공공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자녀에 대한 학군의 평가를 변호하기 위한 적법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귀하의 학군이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공공 비용으로 자녀의 IEE는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주도 평가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거나 사비로 받은 자녀의 평가를 학군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1. 귀하의 학군은 자녀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에서 자녀 평가 결과가 학군의 IEE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2. 귀하 또는 귀하의 학군은 자녀에 대한 적법 심의에서 평가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 심의 담당관의 평가 요청

공정 심의 담당관이 적법 심의의 일환으로 자녀의 IEE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학군 기준

공공 비용으로 실시한 IEE의 경우 평가 장소 및 시험관의 자격 요건을 포함한 평가가 실시되는 기준은 반드시 학군이 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범주와 같아야 합니다.(해당 기준이 IEE에 대한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제외하고, 학군은 공공 비용으로 IEE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일정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비밀 유지

정의

34 CFR 섹션 300.611

정보의 비밀 유지 항목에서 사용된 경우:

*파기*란 정보가 더 이상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개인 식별 요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록*이란 34 CFR 파트 99(1974, 20 U.S.C. 1232g (FERPA))의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는 규정)에서 "교육 기록"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이란 IDEA의 파트 B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정보를 얻는 모든 학군, 기관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개인 식별

34 CFR 섹션 300.32; 8 NYCRR 섹션 200.5(e)

*개인 식별*이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a) 자녀의 성명, 학부모로서 귀하의 성명 또는 기타 가족의 성명

(b) 자녀의 주소

(c)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학생 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d) 자녀를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기타 정보의 목록

학부모 통지

34 CFR 섹션 300.612

뉴욕주 교육부(NYSED)와 학군이 개인 식별 정보를 유지할 때, 다음을 포함하여 부모에게 개인 식별 정보의 비밀 보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뉴욕주의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통지가 제공되는 정도에 대한 설명
2. 개인 식별 정보가 유지되는 아동, 추구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방법(정보 수집 출처 포함) 및 정보의 용도에 대한 설명
3. 참여 기관이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 제3자 공개, 보존 및 파기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 요약 **그리고**
4. FERPA 및 34 CFR 파트 99의 시행 규정 상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정보에 관한 부모와 자녀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주요 식별, 위치 또는 평가 활동(일명 "아동 찾기")을 하기 전에, 이 공지는 부모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찾고, 식별하며,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을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리 수 있는 유통량을 가진 신문이나 다른 매체 또는 둘 다에 게재되거나 발표되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

34 CFR 섹션 300.613; 8 NYCRR 섹션 200.2(b)(6) 및 200.5(d)(6)

참여 기관은 반드시 IDEA의 파트 B에 따라 귀하의 학군에서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지체 없이 자녀에 대한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해야 하며, IEP에 관한 회의 전에 또는 공정한 적법 심의(해결 회의 또는 징계에 관한 심의 포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요청을 한 후 45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귀하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및 해석 요청에 대한 참여 기관의 답변
2. 기록을 받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참여 기관에 기록 사본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3. 귀하의 대리인이 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함

참여 기관은 귀하가 후견, 별거 및 이혼과 같은 문제를 관장하는 관련 주법에 따른 권한이 없다는 통지가 없는 한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기록

34 CFR 섹션 300.614

각 참여 기관은 IDEA의 파트 B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대한 당사자들의 접근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학부모 및 참여 기관의 공인된 직원의 접근 제외) 여기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이 이루어진 날짜, 그리고 당사자에게 기록 사용이 허용된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이상의 아동 기록

34 CFR 섹션 300.615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정보만 검사하고 검토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종류 및 위치 목록

34 CFR 섹션 300.616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참여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한 교육 기록의 유형과 위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

34 CFR 섹션 300.617

각 참여 기관은 IDEA의 파트 B에 따라 수수료가 해당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찾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학부모 요청으로 기록 수정

34 CFR 섹션 300.618

IDEA 파트 B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참여 기관에 정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이 귀하의 요청에 따른 정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에게 거부 사실을 알리고 *심의 기회* 항목에 설명된 심의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심의 기회

34 CFR 섹션 300.619

참여 기관은 요청에 따라 반드시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

34 CFR 섹션 300.621

교육 기록에 있는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의는 FERPA에 따른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

34 CFR 섹션 300.620

심의 결과, 참여 기관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 정보를 변경하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심의 결과, 참여 기관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은 귀하에게 반드시 정보 언급 또는 참여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는 진술을 자녀에 대해 유지하는 기록에 남길 권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의 기록에 남겨지는 설명은 반드시:

1. 참여 기관이 자녀의 기록 또는 이의제기 부분을 유지하는 한, 참여 기관이 자녀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참여 기관이 자녀의 기록이나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도 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공개 동의

34 CFR 섹션 300.622; 8 NYCRR 섹션 200.5(b)

교육 기록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FERPA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참여 기관 관계자 이외의 당사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IDEA의 파트 B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참여 기관의 관계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동의 또는 뉴욕주법에 따라 성년이 된 자격 있는 자녀(18세)의 동의는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의 관계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학군에 위치하지 않는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할 예정인 경우, 해당 사립 학교가 위치한 학군의 관계자와 거주하는 학군의 관계자 간에 자녀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

34 CFR 섹션 300.623

각 참여 기관은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의 한 명의 담당자는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 파트 B 및 FERPA에 따른 뉴욕주의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또는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공개 감사를 위해 해당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이름과 직책의 최신 목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 파기

34 CFR 섹션 300.624

귀하의 학군은 반드시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단, 자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결 기록, 출석 수업, 완료한 학년, 그리고 완료된 연도에 대한 영구 기록은 시간 제한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옵션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식별, 평가, 교육적 배정 또는 무료 적절한 공립 교육(FAPE) 제공에 대해 학부모와 학군 간에 발생하는 우려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적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수 교육 분쟁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별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 중재
- 뉴욕주 불만 제기 그리고
- 적법 절차 심의(공정 심의라고도 함).

학군과 학부모는 가능한 한 덜 적대적인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행정담당자 또는 유치원 특수 교육 위원회(CPSE) 또는 특수 교육위원회(CSE)와 회의를 요청하여 위에 나열되고 아래 자세히 설명된 분쟁 해결 절차 진행하기 전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우려 사항을 논의합니다.

중재

34 CFR 섹션 300.506; 8 NYCRR 섹션 200.5(h)

일반

학군은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 전 발생한 사항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에 따른 모든 사항과 관련된 의견 불일치에 대해 귀하와 학군 간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라는 항목에 설명된 대로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IDEA 파트 B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가 가능합니다.

요건

절차는 중재 절차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귀하와 학군의 참여가 자발적임
2.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거나 지연시키거나 IDEA의 파트 B에 따른 다른 권리를 부인하는 데 사용되지 않음 **그리고**
3. 효과적인 중재 기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갖춘 공정한 중재자가 수행합니다.

학군은 중재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학부모와 학교가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1. 이 당사자는 커뮤니티 분쟁 해결 센터(CDRC)와 계약 중 **그리고**
2. 중재 절차의 장점을 설명하고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알고 있는 CDRC에서 훈련된 자격을 갖춘 중재자를 이용합니다. 중재자는 CDRC에 의해 무작위, 순번 또는 기타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중재 준비하기

중재는 CDRC와 함께 학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뉴욕주는 회의 비용을 포함한 중재 과정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중재 과정에서 각 회의는 적시에 일정을 잡고 귀하와 학군이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중재 합의

귀하와 학군이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양측은 해결책을 명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1.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며 이후 적법 절차 심의나 민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귀하와 학군에 구속력을 가진 학군 대표가 서명합니다.

서면으로 서명된 중재 합의는 관할 주 법원(주법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의는 IDEA의 파트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의 향후 적법 절차 심의나 민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자의 공정성

중재자는:

1. 자녀의 교육 또는 돌봄에 관여하는 뉴욕주 교육 기관이나 학교의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중재자의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지 기관 또는 학군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군이나 뉴욕주 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

적법 심의 불만제기와 뉴욕주 불만제기의 차이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

IDEA의 파트 B 규정은 뉴욕주 불만 제기와 적법 절차 불만 제기 및 심의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학군, NYSED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의 파트 B 요건 위반을 주장하며 뉴욕주 불만 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 또는 아동에게 FAPE 제공의 시작 또는 변경하는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귀하 또는 학군만이 적법 절차 불만 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NYSED 직원은 일반적으로 일정이 제대로 연장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주 불만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 심의 담당관은 반드시 적법 절차 불만을 청취하고(해결 회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의 담당관이 구체적인 일정 연장을 하지 않는 한 해결 기간 종료 후 학령기 아동의 경우 역일 기준 45일 이내, 유아원 아동의 경우 30일 이내(이 문서 해결 절차 항목에 설명된 대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귀하의 요청이나 학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뉴욕주 불만 제기 및 적법절차 불만 제기, 해결 및 심의 절차는 아래 완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 채택

34 CFR 섹션 300.151; 8 NYCRR 섹션 200.5(l)

일반

NYSED는 반드시 다음에 대한 서면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1. 다른 주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접수하는 불만을 포함한 모든 불만 해결
2. NYSED에 불만 접수 뉴욕주 불만 제기 접수 주소: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Special Education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EB
 Albany, NY 12234
3. 학부모 훈련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독립 생활 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을 포함하여 부모 및 기타 관심 있는 개인에게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를 널리 배포.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NYSED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명된 뉴욕주 불만 제기를 해결할 때, NYSED는 다음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그리고**
2.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적절한 향후 서비스 제공.

최소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

34 CFR 섹션 300.152; 8 NYCRR 섹션 200.5(l)

시간 제한; 최소 절차

NYSED는 불만이 제기된 후 60일의 기한을 주 불만 절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1. NYSED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
2. 접수인(불만 제기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불만 혐의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
3. 학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불만 사항에 최소 다음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 기관의 선택에 따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및** (b) 불만을 제기한 부모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학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IDEA의 파트 B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 **및**
5. 불만 사항에 대한 각 주장을 다루고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접수인에게 제공. (a) 밝혀진 사실과 결론 **그리고** (b) NYSED의 최종 결정 이유.

시간 연장; 최종 결정; 실행

위에서 설명한 NYSED의 절차는 반드시: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역일 기준 60일 기한 연장을 허용합니다: (a) 특정 뉴욕주 불만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 **또는** (b) 학부모와 학군 또는 관련된 기타 공공 기관이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
2. 필요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 NYSED의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 (a) 기술적 지원 활동; (b) 협상; (c)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조치.

불만 사항에 대한 NYSED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학군과 학부모는 불만 사항에서 제기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심의를 개시할 권리가 있지만, 공정 심의는 뉴욕주 불만 제기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불만 제기 및 적법 심의

아래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라는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적법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서면 뉴욕주 불만이 접수되거나, 뉴욕주 불만이 해당 심의에 포함된 하나 또는 여러 혐의를

포함하는 경우, NYSED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적법 심의에서 다루어지는 뉴욕주 불만 또는 뉴욕주 불만의 일부를 제쳐두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뉴욕주 불만 제기의 모든 혐의는 위에서 설명한 시간 제한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뉴욕주 불만 제기의 혐의가 이전에 동일한 당사자(귀하와 학군)가 참여하는 적법 심의에서 결정된 적이 있는 경우, 적법 심의 결정은 해당 혐의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NYSED는 해당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적법 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NYSED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 접수

34 CFR 섹션 300.153; 8 NYCRR 섹션 200.5(l)

조직이나 개인은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서명된 서면 뉴욕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불만 제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IDEA의 파트 B 요건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
2.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3. 불만 사항에 대한 서명 및 연락처 정보; 그리고
4. 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a) 아동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b)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
 (c)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연락처 정보와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d) 문제의 사실을 포함한 아동의 문제의 본질 설명 **그리고**
 (e) 불만 제기 시 당사자가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문제 해결 방안.

불만 사항은 ***뉴욕주 불만 제기 절차 채택***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불만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다.

뉴욕주 불만 제기를 접수하는 당사자는 당사자가 NYSED에 불만을 제기하는 동시에 불만 사본을 학군 또는 아동을 담당하는 기타 공공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절차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

34 CFR 섹션 300.507; 8 NYCRR 섹션 200.5(i) 및 200.5(j)

일반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 또는 아동에게 FAPE 제공의 시작 또는 변경하는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귀하 또는 학군은 적법 절차 불만 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법 불만은 귀하 또는 학군이 적법 불만의 기초가 되는 행동에 대해 알기 2년 이내전에 발생했거나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위반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의 일정은 일정 내에서 다음의 이유로 적법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군이 불만 사항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구체적으로 잘못 표시 **또는**
2. 학군이 IDEA의 파트 B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학부모님들을 위한 정보

귀하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귀하 또는 학군이 적법 절차 불만 제기를 접수하는 경우 학군은 반드시 귀하에게 지역에서 제공되는 무료 또는 저가의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안내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

34 CFR 섹션 300.508; 8 NYCRR 섹션 200.5(i) 및 (j)

일반

심의를 요청하려면, 귀하 또는 학군(또는 귀하의 변호사 또는 학군의 변호사)이 상대방에 대한 적법 불만제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불만 사항은 아래에 나열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불만을 접수한 귀하 또는 학군은 반드시 NYSED에 불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의 내용

적법 절차 불만 제기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이의 이름;
2. 아이의 거주지 주소;
3. 아이의 학교 이름;
4. 아이가 노숙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아이의 연락처 정보와 학교 이름;
5.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와 관련된 아동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문제와 관련된 사실 포함; **그리고**
6. 귀하 또는 학군이 그 당시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문제 해결 방안.

적법 절차 불만 제기에 대한 심의 전 필요한 통지

귀하 또는 학군은 귀하 또는 학군(또는 귀하의 변호사 또는 학군의 변호사)이 위에 나열된 정보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 불만 제기를 접수할 때까지 적법 심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불만 사항의 충분성

적법 절차 불만 제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는 적법 불만을 받은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가 불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의 담당관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받은 당사자가 적법 절차 불만 제기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을 통지하지 않는 한 충분하다고 간주됩니다(위 내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불만을 받은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적법 절차 불만 제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공정 심의 담당관은 반드시 적법 절차 불만이 위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즉시 귀하와 학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만 수정

귀하 또는 학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불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서면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아래에 설명된 해결 회의를 통해 적법 절차 불만을 해결할 기회를 부여 받음; ***또는***
2. 적법 절차 심의가 시작되기 최소 5일 전 심의 담당관은 변경을 허가함.

불만 당사자(본인 또는 학군)가 적법 절차 불만을 변경하는 경우, 해결 회의 일정(불만 접수 후 15일 이내)과 해결기간(불만 접수 후 30일 이내)은 수정된 불만 사항이 제기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에 대한 지역 교육 기관(LEA) 또는 학군의 대응

학군이 적법 절차 불만 사항에 포함된 주제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서*** 항목에 설명된 대로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학군은 적법 절차 불만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1. 학군이 적법 절차 불만 제기에서 다룬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
2. 자녀의 CSE 또는 CPSE가 고려한 다른 옵션과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3. 학군이 조치 제안 또는 거부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4. 학군의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에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위 1-4 항목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 학군이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 제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에 대한 기타 당사자의 답변

바로 위 하위 항목인 ***적법 절차 불만 제기에 대한 LEA 또는 학군의 대응***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을 받은 당사자는 불만 접수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모델 양식

34 CFR 섹션 300.509

NYSED는 뉴욕주 불만제기 및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에 도움이 되는 모델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NYSED나 학군에서는 이러한 모델 양식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뉴욕주의 샘플 뉴욕주 불만 양식 또는 샘플 적법 절차 불만 통지 양식, 또는 적법 절차 불만 제기 또는 뉴욕주 불만 제기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는 한 기타 적절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YSED의 뉴욕주 특수 교육 관련 양식 및 통지문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학군에서 양식 사본을 제공할 것이며 NYSED의 특수 교육 담당실에 전화 518-473-2878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 및 심의 계류(미결) 중 자녀의 배정

34 CFR 섹션 300.518; 8 NYCRR 섹션 200.5(m)

장애 아동 징계 절차 항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 불만 제기가 상대방에게

보내진 된 후, 해결 절차 기간 동안, 그리고 공평 적법 절차 심의 결정 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귀하와 귀하의 학군 또는 귀하와 뉴욕주 검토관(SRO)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는 현재의 교육 기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진행이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와 관련된 경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 불만 사항이 공립 학교 초기 입학 신청과 관련된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를 정규 공립 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아원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현재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은 심의와 이의제기 중 프로그램에 승인된 학령기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유아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원 자녀가 현재 특수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귀하와 학군이 동의하면 심의나 이의제기 중에 특수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불만이 IDEA의 파트 C (조기 개입 서비스)에서 IDEA의 파트 B (유아원 특수 교육 서비스)로 전환 중인 아동을 위한 IDEA의 파트 B 하의 초기 서비스 신청과 관련되고 아동이 세 살이 되어 더 이상 파트 C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학군은 아동이 받아온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이 IDEA의 파트 B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귀하가 자녀분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군은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귀하와 학군이 모두 동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고 유아원 연령이 아닌 아동은 심의 및 이의제기 중 승인된 유아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기 개입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34 CFR 섹션 300.510; 8 NYCRR 섹션 200.5(j)

해결 회의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적법 절차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학군은 반드시 귀하와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 제기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CSE 또는 CPSE 회원들과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는:

1. 반드시 학군을 대표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학군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귀하가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는 한 학군 변호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학군은 회의에 참석할 CSE 또는 CPSE의 관련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귀하가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 제기와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논의하여 학군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결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귀하와 학군이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하기로 합의 **또는**
2. 귀하와 학군이 ***중재*** 항목에 설명된 대로 중재 절차 사용에 동의.

학군은 반드시 해결 회의에서 귀하가 참여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결 기간

학군이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로부터 30일 안에 귀하가 만족하는 정도로 적법 절차 불만을 해결하지 않았다면(해결 절차 기간 중), 적법 절차 심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학령기 학생의 경우 45일 일정 또는 유아원 학생의 경우 30일 일정은 30일의 해결 기간 종료 시점에 시작되며 다음 설명된 바와 같이 30일 해결 기간이 수정될 수 있는 특정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귀하와 학군이 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 참석에 동의하실 때까지 해결 절차 및 적법 심의 일정이 지연될 것입니다.**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공정 심의 담당관은 귀하의 공정 심의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이 노력을 문서화 한 후 학군이 해결 회의에 귀하의 참석을 얻어낼 수 없다면 학군은 30일 해결 기간 종료 후 공정 심의 담당관에게 귀하의 적법 불만 제기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문서화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학군이 쌍방 합의된 장소와 시간을 정하려는 노력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통화하거나 시도한 전화와 이러한 전화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귀하에게 보낸 통신의 사본과 받은 답변, 그리고
3. 귀하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그 방문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학군이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해결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또는**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심의 담당관에게 학령기 아동의 경우 45일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이(유아원의 경우 30일 적법 절차 심의 일정) 시작되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해결 기간의 조정

귀하 및 학군이 서면으로 해결 회의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학령기 아동의 경우 45일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이(유아원의 경우 30일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은 다음날 시작합니다.

중재 또는 해결 회의 시작 후 그리고 30일 해결 기간 종료 전 귀하와 학군이 서면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합의하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45일, 유아원의 경우 30일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이 다음날 시작합니다.

귀하와 학군이 30일 해결 기간 종료 후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양측은 서면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중재를 계속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 또는 학군이 중재 절차에서 철회한다면 45일 또는 30일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이 다음날 시작합니다.

서면 합의

해결 회의에서 분쟁 해결안이 도출되면 귀하 및 학군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1. 귀하와 학군에 구속력을 가진 학군 대표가 서명 **그리고**
2. 관할 주 법원(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서 집행 가능

합의 검토 기간

해결 회의의 결과로 귀하와 학군이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귀하와 학군이 합의에 서명한 시점으로 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심의

공정한 적법 심의

34 CFR 섹션 300.511; 8 NYCRR 섹션 200.1(x), 200.5(i) 및 (j)

일반

적법 절차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귀하 또는 분쟁에 관련된 학군은 ***적법 절차 불만 제기*** 및 ***해결 절차*** 섹션에 설명된 대로 공정한 적법 심의를 개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학군은 순번 목록에서 공정 심의 담당관을 임명합니다. 공정 심의 담당관은 공정 심의를 소집합니다.

공정 심의 담당관(IHO)

IHO의 최소 요건:

1. 아동의 교육이나 돌봄에 관여하는 국가 교육 기관이나 학교의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심의 담당관 활동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심의에서 담당관의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IDEA의 규정, IDEA와 관련된 연방 및 뉴욕주 규정, 연방 및 주 법원의 IDEA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4. 표준 법률 관행에 따라 심의를 진행, 결정을 도출하고 작성할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각 학군은 반드시 IHO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의 주제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통지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의 요청 일정

귀하 또는 학군은 귀하 또는 학군이 불만 사항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에 대해 공정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정에 대한 예외

위의 일정은 일정 내에서 다음의 이유로 귀하가 적법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군이 귀하가 불만을 제기한 문제나 사안을 해결했다고 구체적으로 잘못 표시 **또는**
2. 학군이 IDEA의 파트 B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심의 권리

34 CFR 섹션 300.512; 8 NYCRR 섹션 200.5(j)

일반

적법 심의(징계 절차와 관련된 심의 포함) 또는 이의제기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결정 이의제기, 공정한 검토*** 항목에 설명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변호사 및/또는 장애 아동 문제 관련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조언을 구함
2.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 대면, 반대 심문 및 출석 요구

3.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의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
4. 서면 또는 선택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글자 그대로의 심의 기록 확보
 그리고
5. 서면 또는 선택에 따라 전자 형식의 사실과 결정에 대한 결과 확보

정보 추가 공개

적법 심의로부터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전 귀하와 학군은 해당 날짜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귀하 또는 학군이 심의에서 사용하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추천 사항을 서로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IHO는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의에서 관련 평가나 추천을 내놓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학부모 권리

귀하에게 반드시 다음의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1. 자녀의 참석
2. 대중에게 심의 개방
3. 심의 기록, 사실 및 결정에 대한 결과 무료 제공 **그리고**
4. 필요에 따라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사나 모국어에 능통한 통역사를 필요한 경우 무료 이용

34 CFR 섹션 300.513; 8 NYCRR 섹션 200.5(j)

심의 담당관의 결정

자녀가 FAPE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IHO의 결정은 실질적인 근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IHO는 절차적 미비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자녀가 FAPE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FAPE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2.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크게 방해했습니다 **또는**
3. 교육적 혜택의 박탈을 초래했습니다.

해석 규칙

위에서 설명한 조항 중 어느 것도 IHO가 학군에게 IDEA의 파트 B(34 CFR 섹션 300.500에서 300.536)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섹션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 적법 절차 불만 제기, 모델 양식, 해결 절차, 공정한 적법 심의, 심의 권리, 및 심의 결정(34 CFR 섹션 300.507-300.513) 중 무엇도 SRO와의 적법 심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의제기 - 결정의 최종성** 참고).

적법 심의 별도 요청

IDEA의 파트 B(34 CFR 섹션 300.500-300.536)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섹션에는 이미 제출된 적법 절차 불만과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속성 검토 및 구제 명령

8 NYCRR 섹션 200.5(j) 및 (o)

일반

귀하는 196일 이상 IHO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적법 절차 불만 제기에 대한 구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즉시 IHO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속성 검토 요청을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IHO가 임명될 것입니다. 임명되면 IHO는 학부모가 제출한 구제 명령에 따라 학생을 위한 적절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명령 또는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통지

학군은 **귀하가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한 날로부터 196일** 이내에 속성 검토를 요청할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군은 반드시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후 **196일 경과한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속성 검토를 요청하기 전 고려 사항:

1. 속성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속성 검토 요청은 귀하의 선택이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장애 학생으로 처음 판명된 경우 또는 발현 결정에 대한 요청에 대한 속성 검토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속성 검토가 **공정한 적법 심의, 심의 권리 및 심의 결정**(34 CFR 섹션 300.507-300.513)에 설명된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 대신 수행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귀하는 검토가 *전적으로* 서면 기록으로 이메일을 통해서만 수행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5. 귀하의 속성 구제 최초 요청부터 심의관의 최종 결정 발표까지의 일정은 최대 업무일 기준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공정 심의관의 최종 결정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a) 귀하의 제안된 구제 명령; (b) 기록에 따라 공정 심의관이 수정한 귀하의 제안된 구제 명령 (c) 기록에 따라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 그리고
7. 귀하 또는 학군이 공정 심의관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정을 뉴욕주 검토 담당실(Office of State Review)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뉴욕주 검토 담당실은 공정 심의관은 귀하가 제안한 구제 조치를 명령한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의제기(APPEALS)

결정의 최종성, 이의제기, 공정한 검토

34 CFR 섹션 300.514; 8NYCRR 섹션 200.5(k)

심의 결정의 최종성

적법 심의(징계 절차와 관련된 심의 포함)에서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이지만, 심의에 참여한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해당 결정에 대해 NYSED의 뉴욕주 검토 담당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HO 결정에 대한 주 차원의 이의제기

IHO가 내린 결정은 귀하나 학군이 SRO가 IHO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입니다(검토 요청이라고 함). IHO 결정에 대해 SRO에 이의제기하려면, **IHO 결정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학군에 검토 요청 의사 통지서(양식 A)를 전달해야 합니다. 검토 요청 통지서(양식 B)와 검토 요청은 반드시 **IHO의 결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학군에 인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SRO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SRO는 귀하 또는 학군의 적시 서면 요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특정 시한 동안이어야 합니다.

2. 서면 사본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사실 및 결정을 상기 SRO에 의해 30일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 및 교육국(BOE)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SRO에 이의제기하는 규칙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ro.nysed.gov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SRO는 이의를 제기한 결과 및 결정에 대해 공정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토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1. 전체 심의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심의 절차가 적법 절차의 요건과 일치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를 얻기 위해 심의가 열리는 경우, ***심의 권리*** 항목에서 설명한 심의 권리가 적용됩니다
4. 검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변론 또는 둘 다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5. 검토 완료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6. 귀하와 학군에 서면 사본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사실 결과와 결정을 제공합니다.

검토 결정의 최종성

SRO가 내린 결정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귀하 또는 학군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입니다.

심의 및 검토의 일정 및 편의

34 CFR 섹션 300.515; 8 NYCRR 섹션 200.5(j) 및 200.16(h)

학군은 해결 회의의 30일기간 만료 후 학령기 학생의 경우 45일 또는 유치원생의 경우 또는 30일 이내에, 또는 ***30일 해결 기간의 조정*** 하위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조정 기간 만료 후 학령기 학생의 경우 45일 또는 유치원생의 경우 30일 이내에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심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짐 **그리고**
2. 결정문 사본이 귀하와 학군에 발송됨

SRO는 검토 요청을 받은 후 최소 30일 이내에 또는 SRO에 의해 연장된 시간 이내에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검토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짐 **그리고**

2. 결정문 사본이 귀하와 학군에 발송됨

IHO 또는 SRO는 귀하 또는 학군이 특정 일정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기간(학령기의 경우 45일 또는 유치원의 경우 30일의 심의 결정 일정 및 30일의 SRO 결정 일정)을 초과하여 특정 시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 변론과 관련된 각 심의 및 검토는 귀하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이런 소송 접수의 기간

34 CFR 섹션 300.516; 8 NYCRR 섹션 200.5(k)

일반

주 차원의 검토에서 결과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적법 절차 심의(징계 절차와 관련된 심의 포함)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관할 주 법원(이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학군)는 SRO의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모든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1. 행정 절차의 기록을 수신합니다.
2. 귀하의 요청이나 학군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증거의 우세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제공합니다.

지방법원 관할권

미국 지방법원은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 규칙

IDEA의 파트 B의 그 어떤 내용도 미국 헌법, 1990년 미국 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제5조(섹션

504조)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 절차 및 구제책을 제한하거나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라 IDEA 파트 B에도 제공되는 구제를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에서 설명한 적법 절차 절차는 당사자가 IDEA 파트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동일한 정도로 소진되어야 합니다. 즉, IDEA에 따른 구제책과 중복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책을 얻으려면 바로 법정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IDEA에 따른 행정 구제책(즉, 적법 절차 이의제기, 해결 회의 및 공정한 적법 심의 절차)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34 CFR 섹션 300.517

일반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조치나 절차에서 귀하가 승소할 경우, 법원 재량으로 귀하의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조치나 절차에 대해 다음의 경우 법원 재량으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승소한 학군 또는 뉴욕주 교육부에게 귀하의 변호사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 법원이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고소 또는 법원 소송을 제기 **또는** (b) 소송이 명백히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함

또는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조치나 절차에 대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비용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수여할 수 있으며, 적법 심의 또는 이후 법원 사건에 대한 요청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또는 불필요하게 조치나 절차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 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변호 비용을 수여합니다:

1. 비용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에 대해 조치나 심의가 시작된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계산할 때 보너스나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서면 합의 제안 후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IDEA의 파트 B에 따른 조치나 절차에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68조에 규정된 시간 내에 제안이 이루어지거나 적법 심의 또는 주 차원의 검토의 경우 절차 시작 전 10일 이후 이루어짐

b. 제안이 10일 이내에 수락되지 않음 **그리고**

c. 법원이나 행정 심의 담당관이 귀하가 최종적으로 얻은 구제책이 합의 제안보다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만약 귀하가 승소하고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당하다면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을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 절차나 법원의 조치의 결과로 열린 회의를 제외하고 CSE 또는 CPSE 회의와 관련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결 회의 항목에 설명된 해결 회의는 행정 심의나 법원 조치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변호사 비용 조항의 목적상 행정 심의나 법원 조치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IDEA의 파트 B에 따라 수여되는 변호사 비용의 금액을 적절히 삭감합니다:

1.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조치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킴.
2. 그 외 허가된 변호사 비용의 액수가 해당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비슷한 기술, 평판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부여하는 시간당 비용을 부당하게 초과함.
3. 조치나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소요된 시간과 법률 서비스 제공 과도함. **또는**
4. ***법적 절차 불만 제기*** 항목에 설명된 적법 절차 요청 통지서에 귀하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적절한 정보를 학군에 제공하지 않음.

그러나 법원이 뉴욕주 또는 학군이 조치 또는 절차의 최종 결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IDEA의 파트 B 절차적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비용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 징계 절차

학교 교직원의 권한

34 CFR 섹션 300.530; 8 NYCRR 섹션 201.2 - 201.7

사안 별 결정

학교 교직원은 징계와 관련된 다음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배치 변경이 학교의 학생 품행 규정을 위반한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적으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장애 학생의 징계 절차는 반드시 교육법 섹션 3214 및 교육감 규정 파트 201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의 품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정학 또는 제외할 권한이 있지만, 귀하와 자녀는 그 과정에서 일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1. 가능하면 즉시 전화로 통지 받고 5일 이하의 정학 제안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음. 통지에는 사건, 정학 제안, 자녀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학교장과의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 회의는 자녀의 학교 출석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학 전에 열릴 예정입니다(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자녀가 정학 된 후 비공식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2. 정학이 연속 수업일 5일 이상인 경우 자녀의 변호 및 증인 신문 및 출석 권리를 명시한 교육감 심의 기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음.
3. 자녀가 의무 학령기인 경우,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정도로 정학 또는 제외 기간의 첫 10일 동안 대체 교육을 받음.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장애가 없는 아동에 대한 조치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교직원은 연속 **수업일 10일** 이내로 학생 품행 규정을 위반한 장애 아동을 현재의 배정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CSE 또는 CPSE가 결정한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 다른 환경 또는 정학으로 배정됩니다. 학교 교직원은 또한 같은 학년도에 별도의 위반 사건으로 **수업일 10일** 이내로 아동을 추가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런 제외는 배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정의는 ***징계 제외로 인한 배정 변경*** 참고).

장애 아동이 현재 배정에서 한 학년도에 총 **수업일 10일**간 제외되면 학군은 반드시 해당 학년도의 이후 제외된 날에는 *서비스* 하위 항목에 요구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권한

학생 품행 규정을 위반한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발현이 아니고(아래의 *장애 판정* 참조), 징계적 배정 변경이 연속 **수업일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교직원은 장애 아동에게 장애가 없는 아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학교는 반드시 *서비스* 아래 설명된 바에 따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CSE 또는 CPSE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IAES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현재 아동의 배정에서 제외된 장애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IAES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유사하게 제외된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도에 현재 배정에서 **수업일 10일 이내**로 제외된 장애 아동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의무 학령기 학생인 경우, 학군은 반드시 학년도에 10일 이하로 정학 받은 장애 학생에게 대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의무 학령기가 아닌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대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년도에서 정학 첫 10일 동안 장애 학생에게 대한 교육 서비스 요건은 비장애 학생들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최소 2시간(주당 10시간), 중등학생의 경우 하루 3시간(주당 15시간)의 대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무 학령기가 아닌 학생이 정학당한 경우, 학군은 비장애 학생에게 학업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 대체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일 10일 이상 현재 배정에서 제외된 장애 학생은 반드시:

1. 다른 환경이지만 일반 교육 교과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고 IEP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2. 적절한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FBA) 및 행동 위반에 대처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행동 개입(BIP) 서비스 및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같은 학년도에 **수업일 10일** 동안 현재 배정에서 제외된 후, 그리고 현재 제외가 **수업일 연속 10일** 이하 **그리고** 배정 변경이 아닌 **경우**(아래 정의 참조), 학교 관계자는 아동의 교사 중 한 명 이상과 상의하여 아동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교과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IEP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진척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제외가 배정 변경인 경우(아래 정의 참조), 아동의 CSE 또는 CPSE는 아동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교과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발현 결정

학생 품행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장애 아동의 배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수업일 10일** 이내에(**수업일 10일** 연속으로 또는 이하의 제외이고 배정 변경 아닌 경우 제외), 학군, 학부모 및 CSE 또는 CSE의 관련 구성원(학부모와 학군에 의해 결정)은 아동의 IEP, 교사의 관찰 및 학부모가 제공한 관련 정보가 포함한 학생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1.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는**
2. 해당 행동이 학군이 아동의 IEP를 시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

학군, 학부모 및 아동의 CSE 또는 CPSE 관련 구성원이 이러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아동의 장애의 발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군, 학부모, 그리고 아동의 CSE 또는 CPSE의 관련 구성원들이 해당 행동이 학군이 IEP를 이행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경우, 학군은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행동아 아동의 장애의 발현으로 판정

학군, 학부모 및 CSE 또는 CPSE의 관련 구성원이 해당 행위가 아동의 장애 징후라고 판단하는 경우, CSE 또는 CPSE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학군이 배치 변경을 초래한 행동 전 FBA를 실시하지 않는 한, FBA를 실시하고 아동을 위한 BIP를 시행합니다; **또는**
2. 이미 BIP가 개발된 경우, BIP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행동에 대처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부모와 학군이 행동 개입 계획의 수정의 일환으로 배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학군은 아동을 제외된 배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특수 상황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교직원은 다음의 경우 최대 45일 동안 IAES(아동의 CSE 또는 CPSE에 의해 결정)로 학생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학교에 무기를 소지하거나(아래 정의 참조) 학교, 학교 구내 또는 NYSED 또는 학군 관할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학교, 학교 구내 또는 NYSED 또는 학군 관할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아래 정의 참조),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아래 정의

참조); **또는**

3. 학교, 학교 구내 또는 NYSED 또는 학군 관할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아래 정의 참조).

정의

*규제 약물*이란 규제 약물법(21 U.S.C. 812(c) 섹션 202(c)의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따라 식별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법 약물*은 규제 약물을 의미하지만, 자격증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법적으로 소유 또는 사용되는 규제 약물이나 그 법 또는 연방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소유 또는 사용되는 통제된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신체 상해*는 미국 법전 타이틀 18 섹션 1365 하위 섹션 (h) 3문단에 정의된 "심각한 신체 상해" 용어를 의미합니다.

*무기*는 미국 법전 타이틀 18 섹션 930 하위 섹션 1 2문단에 정의된 "위험한 무기" 용어를 의미합니다.

통지

학생 품행 규정 위반으로 아동의 배정이 변경되는 제외 결정을 만든 날짜에 학군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그 결정을 (사전 서면 통지) 통지하고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징계 제외로 인한 배정 변경

34 CFR 섹션 300.536; 8 NYCRR 섹션 201.2

장애 학생을 현재 교육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정 변경입니다:

1. 연속 수업일 10일 이상 제외 **또는**
2. 아동이 다음의 이유로 패턴을 만드는 연속 제외의 대상이 됨:
 a. 학년도에 총 수업일 10일 이상 제외
 b. 아동의 행동이 제외 연속된 제외를 초래한 예전 사건에서의 행동과 상당히 비슷함. 그리고

c. 각 제외의 기간, 제외된 총 시간 및 한 제외와 다른 제외 사이의 간격과 같은 추가적 요소.

제외 패턴이 배정 변경의 사유가 되는지는 여부는 학군이 사안 별로 결정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적법 절차 및 사법 처리를 통한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환경 결정

34 CFR 섹션 300.531; 8 NYCRR 섹션 201.10

CSE 또는 CPSE는 반드시 **배정 변경**이 되는 제외에 대한 IAES 및 상기 ***추가 권한*** 및 ***특수 상황*** 항목의 제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34 CFR 섹션 300.532; 8 NYCRR 섹션 201.11

일반

장애 아동의 부모가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 불만 제기(위 참조)을 제기하여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 징계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 **또는**
2. 위에서 설명한 발현 결정.

학군은 현재 아동의 배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이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적법 절차 불만 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 심의 담당관의 권한

하위 항목 ***공정 심의 담당관***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는 심의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심의 담당관이 제외가 학교 교직원의 권한 항목에 설명된 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제외된 배정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2. 심의 담당관이 현재 아동의 배정이 아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 아동의 배정을 45일 이내의 적절한 IAES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군이 아동을 원래 배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심의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군이 심의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 불만 제기를 접수할 때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절차,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심의 및 결정의 이의제기: 공정한 검토*** 항목에 설명된 요건에 부합하는 심의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군은 반드시 속성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련하여 심의 요청일로부터 수업일 **2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심의 후 수업일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학부모와 학군이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불만 제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결 회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제기 접수 후 **15일** 이내에 양 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다른 적법 절차 심의의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속성 적법 절차 심의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이의제기*** 참조).

이의제기 중 배정

34 CFR 섹션 300.533; 8 NYCRR 섹션 201.10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부모 또는 학군이 징계 관련 적법 절차 불만 제기를 접수했을 때 아동은 반드시 (학부모와 NYSED 또는 학군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IHO의 결정까지 또는 ***학교 교직원의 권한*** 항목에 설명되고 제시된 제외 기간의 종료 중 더 빠른 시점까지 IASE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아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자격이 없는 학생 보호

34 CFR 섹션 300.534; 8 NYCRR 섹션 201.5

일반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지 않았고 학생 품행 규정을 위반했지만 학군이 (아래 결정된 바와 같이) 징계 조치가 내려진 행동 전 아동이 장애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면 아동은 이 통지에 설명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안에 대한 인지의 근거

학군은 다음의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진 행동 전 아동이 장애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학부모가 적절한 교육 기관의 감독 또는 행정 담당자 또는 자녀의 교사에게 아동이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우려를 서면으로 나타냄.

2. 학부모가 IDEA 파트 B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함 **또는**
3.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군 관계자가 아동이 보인 행동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학군의 특수 교육 디렉터 또는 기타 학군의 감독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함.

예외

학군은 다음의 경우 이런 인지가 없었다고 간주됩니다:

1.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의 평가를 허락하지 않거나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함 **또는**
2. 아동이 평가를 받았으며 IDEA 파트 B에 의거한 장애 아동이 아님이 판명됨.

인지 근거가 없을 때 적용되는 조건

아동에게 징계 조치를 하기 전 위의 *징계 사안에 대한 인지의 근거* 및 *예외* 하위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군이 아동이 장애 아동임을 알지 못한 경우 아동은 유사한 행동을 한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기간 중 아동에 대한 평가 요청이 있다면 평가는 반드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배정에 남아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학 또는 교육 서비스가 없는 퇴학도 포함됩니다.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판명된다면 학군이 실시한 평가의 정보와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학군은 반드시 위에 설명된 징계 요건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의 의뢰 및 조치

34 CFR 섹션 300.535

IDEA 파트 B는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1. 기관이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 **또는**
2. 뉴욕주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이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본연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을 방지.

기록 전달

학군이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면 학군은:

1. 반드시 아동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범죄를 신고한 당국이 고려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 FERPA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아동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및 민영 혜택/보험 사용

공공 보험 해당 장애 아동

34 CFR 섹션 300.154; 8 NYCRR 섹션 200.5(b)(8)

학군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지불을 위해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Medicaid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청구하기 위해 학군은 반드시:

1. 아동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음(**학부모 동의 - 정의** 항목의 섹션에 부합)
2. 귀하에게 귀하 또는 아동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최초로 그리고 그 후 매년 이용하기 전 서면 통지문을 제공. 이 서면 통지문은 반드시 다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a) 자녀가 FAPE를 받기 위해 꼭 공공 혜택을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님.
 b) 귀하는 서비스 청구 시 공제 또는 코페이 지불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
 c) 학군은 다음의 경우 아동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 가능한 평생 보장 또는 기타 보험 혜택 감소.

- 이로 인해 가정이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보장되거나 아동이 학교에 있지 않을 때 아동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 혜택 또는 보험료 인상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또는
- 총 건강 관련 지출에 따른 주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에 대한 자격 상실 위험.

d) 귀하가 공공 혜택이나 보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서 모든 IEP 서비스를 귀하의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하는 학군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e) 귀하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영 보험 해당 장애 아동

34 CFR 섹션 300.154; 8 NYCRR 섹션 200.5(b)(0)

FAPE을 자녀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학군은 ***학부모 동의 - 정의*** 항목의 섹션에 부합하여 귀하가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귀하의 민영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군이 민영 보험 혜택 이용을 제안할 때마다 반드시:

- 귀하의 동의를 구함. 그리고
- 귀하가 민영 보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요구되는 서비스를 귀하의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하는 학군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군은 귀하의 혜택 또는 보험을 이용하여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공제 또는 코페이 등)을 지불하기 위해 IDEA 파트 B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가 일방적으로 공공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배정하기 위한 요건

일반

34 CFR 섹션 300.148

IDEA의 파트 B는 학군이 귀하의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였고 귀하가 자녀를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비용을 학군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 학교가 위치한 학군은 34 CFR 섹션 300.131에서 300.144에 따라 부모가 사립 학교에 배정한 아동에 대한 파트 B 규정에 따라 필요가 충족되는 인구에 자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립 학교 배정에 대한 상환

자녀가 이전에 학군의 권한 하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으며 귀하가 학군의 동의나 의뢰 없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하기로 선택한 경우, 법원이나 심의 담당관은 법원이나 IHO가 기관이 등록 전 적시에 FAPE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립 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이 등록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HO 또는 법원은 귀하의 배정이 NYSED 및 학군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뉴욕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환 제한

위 문단에 설명된 상환 비용은 다음의 경우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경우: (a) 귀하가 자녀를 공립 학교에서 제외하기 전 가장 최근에 참석한 CSE 또는 CPSE 회의에서 귀하가 CSE 또는 CPSE에 귀하의 우려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 학교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포함해 자녀에게 학군이 FAPE를 제공하기 제안한 배정을 거부함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b) 공립 학교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최소 운영일 기준 10일 전 학군에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자녀를 공립 학교에서 제외하기 전 학군이 자녀분을 평가하겠다는 의시가 담긴 사전 서면 통지문을 귀하에게 제공하였으나(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의 목적 진술 포함) 귀하가 자녀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3. 법원에서 귀하의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하지만 상환 비용은

1. 다음의 경우 통지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 없습니다: (a) 학교가 귀하가 통지문을 제공하지 못하게 함. (B) 귀하가 위에 설명된 통지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함. 또는 (c) 위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가 가해질 수 있음. **그리고**
2. 법원이나 IHO의 재량으로 다음의 경우 학부모가 필수 통지 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삭감이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A) 학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를 쓸 수 없음. (B) 위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해가 가해질 수 있음.

자료

미 연방 교육부 - IDEA 사이트
(연방 규율 규정 파트 300 포함)

뉴욕주 교육부

NYSED 특수 교육 담당실

교육부 장관 규정 섹션 파트 200 및 201

특수 교육 수준 보장 지역 담당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특수 교육 수준 보장 지역 담당실

중앙부서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Hughes State Office Building
333 E. Washington Street, Suite 210
Syracuse, NY 13202
(315) 428-4556

(315) 428-4555 (팩스)

동부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89 Hanson Place, Room 309

Albany, NY 12234
(518) 486-6366
(518) 473-5769 (팩스)

Hudson Valley Albany

Site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89 Hanson Place, Room 309
Albany, NY 12234
(518) 473-1185
(914) 402-2180 (팩스)

Peekskill Site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1 Park Place, 3rd Floor
Peekskill, NY 10566
(914) 940-2900
(914) 402-2180 (팩스)

뉴욕시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55 Hanson Place, Room 545
Brooklyn, NY 11217-1580
(718) 722-4544
(718) 722-2032 (팩스)

Long Island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Perry B. Duryea, Jr. State Office Building

Room # 2A-5
Hauppauge , NY 11788
(631) 952-3352

(631) 952-3834 (팩스)

Western

(NYS 맹인 학교) NYS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2A Richmond Avenue
Batavia, NY 14020
(585) 344-2002
(585) 344-2422 (팩스)

비학군 유닛

Albany Site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89 Hanson Place, Room 309
Albany, NY 12234
(518) 473-1185

(518) 402-3582 (팩스)

Peekskill Site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수준 보장

1 Park Place, 3rd Floor

Peekskill, NY 10566

(914) 940-2900
(914) 402-2180 (팩스)

뉴욕시 추가
절차적 보호 통지문
2020 년 10 월

랭귀지 액세스 서비스
요청하실 경우, 학부모님들은 특수교육 회의 통역 서비스 및 IEP, 각종 검사 그리고 통지문의 번역본을 받아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랭귀지 액세스 서비스 요청은 자녀의 IEP 팀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의 IEP 번역 신청은 웹 페이지 schools.nyc.gov/IEPHello 나 전화 718-935-2013 번으로 연락 하셔도 됩니다. 랭귀지 액세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DOE 웹사이트 (schools.nyc.gov/connect-with-us)에 설명된 문제제기 절차에 따르십시오. 귀하의 문제가 학교나 학군 차원에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식 불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을 신고하는 상세 방법은 DOE 웹사이트 (schools.nyc.gov/school-life/school-environment/get-help/parent-complaints-and-appeals)에 있습니다.

학령기 (5-21 세) 타임라인
최초 평가
자녀가 현재 아무런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받을 경우, NYC 교육청(DOE)에서는 귀하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신 자녀 평가 동의서를 접수한지 60 수업일(여름방학 중에는 업무일) 이내에 반드시 귀 자녀를 평가하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주선해야 합니다. IEP 에서 뉴욕주 교육부(NYSED) 인가 비공립 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할 경우, DOE 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주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30 수업일(여름방학 중에는 업무일)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재평가
자녀가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DOE 는 재평가 요청을 접수한지 60 수업일(여름방학 중에는 업무일) 이내에 반드시 귀 자녀를 평가하고, IEP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주선해야 합니다. IEP 에서 인가받은 비공립 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할 경우, DOE 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주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30 수업일(여름방학 중에는 업무일)이 더 주어집니다.

P-1 레터
자녀에게 특수학급이 추천되었으나 동의서(최초평가를 위한) 또는 재평가 요청(재평가를 위한) 접수일로부터 60 수업일 이내 배정을 받지 못했거나(학년도 중), 다음 학년도를 위한 배정인 경우 8 월 15 일까지 배정받지 못했을 때에는, 자녀가 NYSED 인가 비공립 데이스쿨 프로그램에 다녀도 좋다는 자격을 명시한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 등록은 해당 학년도 비용을 DOE 에서 지급합니다. 이 통지문에는 NYSED 인가 비공립 데이스쿨(통학하는 학교) 목록이 첨부됩니다.

타임라인 예외 사항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평가, IEP 및/또는 배정 절차를 지연하신 경우, 지연된 날짜들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정은 귀 가정이 평가기간 동안 학군을 옮기는 등의 특정 상황 하에서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아원 (3-5 세) 타임라인
최초 평가
귀하는 자녀의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유아원 평가 기관을 선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 기관은 사설 기관이지만 뉴욕시 교육청(DOE)에도 특수교육 위원회(CSE) 사무실에 유아원 평가팀이 있습니다. 유아원 평가 기관에서는 귀하가 초기 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최초 평가 약속일로부터 20 수업일 이내에 반드시 귀 자녀의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CPSE 는 귀하가 최초 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60 역일 이내에 CPSE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서명을 하신 후 타임라인이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첫 평가 예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유자격자로 판명될 경우 서비스는 CPSE 회의일자로부터 30 수업일 이내, 또는 귀하가 최초 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60 수업일 이내(둘 중 더 빨리 도래하는 날짜), 또는 유아원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 개시일부터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재평가

자녀가 유아원 장애 학생으로 분류된 후 언제든 자녀의 재평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CPSE 에서는 CPSE 와 부모님이 서면으로 동의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1 년에 1 회 이상이 아닌 경우 재평가를 마련할 것입니다. CPSE 는 재평가 요청 60 수업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IEP 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사설 교육 평가

귀하는 본 절차적 보호 통지문의 사설 교육 평가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DOE 에서 제시한 평가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설 교육 평가(IEE)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해 상충법(뉴욕시 차터 제 68 항)에 의거하여, 교육청 직원이 IEE 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급 기준

IEP 학생은 교육감 규정 A-501 (schools.nyc.gov/about-u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2)에 명시된 NYCDOE 진급 정책에 따라 진급합니다.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정의한 진급 벤치마크를 목표로 얼마나 진척을 보였는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측정 수단을 사용하여 학생의 진척을 평가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수의 3-8 학년 IEP 학생을 대상으로 IEP 팀에서는 학생의 IEP 에 조정된 진급 기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장애 학생의 IEP 에는 표준 진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외 상황에서만 3 – 8 학년 장애학생에게 조정된 진급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녀의 IEP 에는 ELA 및/또는 수학에서 표준이나 조정된 진급 기준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명시됩니다.

3-8 학년 IEP 학생 중 진척 속도 및 장애의 영향이 너무 심각하여,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과 서비스, 편의, 특수 고안된 수업 등을 제공하여도 학교의 진척 벤치마크에 도달할 수 없는 학생들만 ELA 및/또는 수학에서 조정된 진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정된 진급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러한 진급 기준이 결정된 시점에 본인의 IEP 에 적시된 ELA 및 수학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8 학년이 9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4 과목(ELA, 수학, 과학, 사회)을 모두 패스해야 합니다.

표준 또는 조정 진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녀가 특정 과목에서 서머스쿨을 반드시 다녀야 한다면 6 월에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8 월에 서머스쿨이 끝날 무렵 최종 진급 결정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최종 진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8 월 마지막 주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학교장은 이 최종 진급 결정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DOE 학교에 재학 중인 대안 평가 참여 IEP 학생은 진급 기준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학부모 센터

뉴욕시에는 특수교육 학부모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하여 장애 아동 부모님들에게 정보와 자료, 전략을 제공합니다:

1. 특수교육 절차(의뢰, 개별 평가 및 개별 교육 프로그램 작성, 전환 계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참여 도모
2. 자녀 장애의 이해를 도움
3. 학부모와 학군 간의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4. 갈등해결 세션 및 특수교육 중재가 적극 활용 되도록 지원
5. 공정 심의 권리 및 이의제기, 뉴욕주 불만 접수 절차 등, 절차적 적법 권리의 이해를 도움
6. 부모들이 효율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증대
7. 부모들이 타 학교 및 기타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자녀를 옹호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함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학부모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센터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 #	팩스 #	이메일 주소	메모
Parent to Parent NY, Inc. / 스태튼 아일랜드 특수교육 학부모 센터	1050 Forest Hill Rd. #108 Staten Island, NY 10314	Joanne Vitale, Director	(718) 494-4872	(718) 494-4805	joanne.d.vitale@opwdd.ny.gov	• 스태튼 아일랜드 관할 • 웹사이트: https://parenttoparentnyinc.org/home.html
INCLUDEnyc (구 Resource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공동지원 United We Stand of NY	116 E. 16th Street 5 층 New York, NY 10003	Rich Overton,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Renee Becerra, 학부모 정보 및 훈련 코디네이터	(212) 677-4660 (영어) (212) 677-4668 (스페인어)	(212) 254-4070	roverton@includenyc.org rbecerra@includenyc.org info@includenyc.org	•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맨해튼 관할 • 웹사이트: www.includenyc.org

법률 서비스 및 지원기관

다음은 공정 심의에서 아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 및 권익 단체 목록입니다. 각 단체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체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 #	팩스 #	이메일 주소	메모
Legal Services – NYC			(917) 661-4500 City Legal Assistance Hotline			• NYC 주민 대상 •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gal Services – Brooklyn	105 Court Street, 4th Fl. Brooklyn, NY 11201		(718) 237-5500	(718) 855-0733		• 브루클린 주민 대상 •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gal Services – Bronx	349 E. 149th St., 10th Fl. Bronx, NY 10451		(718) 928-3700	(718) 402-7566		• 브롱스 주민 대상 •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gal Services – Manhattan (Upper)	1 West 125th St., 2nd Fl. New York, NY 10027		(646) 442-3100 (212) 348-4093			• 맨해튼 주민 대상 •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gal Services – Manhattan (Lower)	40 Worth St., Ste., 606 New York, NY 10027		(917) 661-4500			• 맨해튼 주민 대상 •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gal Services – Queens	89-00 Sutphin Blvd. 5th Floor Jamaica, NY 11435		(347) 592-2200	(718) 526-5051 (718) 657-8581		• 퀸즈 주민 대상 •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gal Services – Staten Island	36 Richmond Terrace, Ste. 205 Staten Island, NY 10301		(718) 233-6480	(718) 448-2264		•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 대상 •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	151 W. 30th St., 11th Fl. New York, NY 10001		(212) 244-4664	(212) 244-4570		• 5 개 보로 주민 대상 • 예약 필수 • www.nylpi.org

단체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 #	팩스 #	이메일 주소	메모
Mobilization for Justice	100 William Street 6th floor New York, NY 10038		(212) 417-3786	(212) 417-3890	specialed@mfjlegal.org	• 5 개 보로 주민 대상 • 저소득층은 무료 http://mobilizationforjustice.org/projects/warren-j-sinsheimer-childrens-rights-program/
NY Legal Assistance Group	7 Hanover Sq., 18th Fl. New York, NY 10004		(212) 613-5000		info@nylag.org	www.nylag.org
Advocates for Children	151 W. 30th St., 5th Fl. New York, NY 10001		(212) 947-9779 헬프라인: (866) 427-6033	(212) 947-9790	info@advocatesforchildren.org	www.advocatesforchildren.org www.insideschools.org
Sinergia, Inc.	2082 Lexington Ave. 3층 New York, NY 10035		(212) 643-2840	(212) 643-2871		www.sinergia.org

참고: NYC 교육청은 상기 수록된 기관들의 능력 또는 업무 결과에 대한 어떤 지지도 하지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